

공

고

●대전전파관리소공고 제2025-7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8. 8.

대전전파관리소장(관인생략)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행정처분(운용정지 1개월) 알림」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제77조(청문)
2. 위반사항: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3. 처분내용: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기간: **2025. 8. 26. ~ 2025. 9. 24.**
5. 대상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42-2019-30-0000339	205대*호	지*일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2	42-2013-50-0000062	216한*로호	김*희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보령시 오천면 솟재길

6. 참고사항

- 가. 운용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운용정지 기간 중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 받을 시 운용정지 처분이 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